

제179회 영등포구의회
2013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길자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12. 4

運 營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63호로 2013년 11월 19일 김길자 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의결방법을 구체화 함(안 제4조)
- 나. 검사위원 중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대표 의원을 두고, 대표의원은 의원인 검사위원이 되도록 함(안 제4조의2)
- 다. 위원회에서라도 결산심의 등 필요시 검사위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라.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3조 및 제84조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사항으로
 - 안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은 구의회 의결로 선임하고, 의결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음.
 - 안 제4조의2에 결산검사 위원 중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대표위원을 두고, 대표위원이 되는 위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.
 - 안 제6조에 검사위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위원회를 추가함.
 -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인 결산검사의 위원선임 방법을 구체화하고, 대표위원의 자격 및 직무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개정으로,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